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67
----------	-----

2016. 5. 4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7일

-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은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의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 하고,

○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경비지원 근거 조례를 변경

나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(안 제8조)

- 현행 : 도비 40%, 시군비 60%
- 변경 : 도비 30%, 시군비 70%(청주시는 80%)

○ 출산장려금 경비지원 제반사항의 근거조례 변경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의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 하고, 경비지원 근거 조례였던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임.
- 조례를 정비하여 도비보조율을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조례의 폐지로 근거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. 다만 출산장려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한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으로 현재까지 시·군에 어떻게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36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347 회)

**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간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
-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폐지로 경비지원 근거 조례 변경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(안 제8조)
 - 현행 : 도비 40%, 시군비 60%
 - 변경 : 도비 30%, 시군비 70%(청주시는 80%)
- 출산장려금 경비지원 제반사항의 근거조례 변경(안 제13조)
 -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폐지(“15.1.1)에 따라
“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”를 “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”로 변경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도가 100분의 40을 시·군이 100분의 60을 부담한다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원금의 분담) 지원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도가 100분의 40을 시·군이 100분의 60을 부담한다.	제8조(지원금의 분담) ----- ----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, 예산요구 및 교부,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-----.

관련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

제3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.

<별표>

연번	사 업 명	기준보조율		비고
		청주시	기타시군	
67	출산장려 사업	20	30	